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 - 58호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주차 공간 부족, 문콕 등 주차 문제로 인한 이웃간 불편과 갈등 해소를 위해 법정기준 외 추가로 주차공간을 확보했을 경우 분양가에 가산될 수 있도록 가산비용 기준에 주차공간 항목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항목별 성능등급서에 따른 배점기준을 보완(안 별표 1)

- 1) 건축비 가산시 주차공간 성능등급을 고려할 수 있도록 성능항목에 ‘주차공간 추가확보’을 신설하고 성능등급(1~4등급)별 점수기준을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15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주택건설공급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팩스 : 044-201-56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 044-201-3365, 33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